

공무원 음주운전 대응방안

Effectiv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Drunk Driving

신재현*, 김상운**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Jae-Hun Shin(enfant21@naver.com)*, Sang-Woon Kim(ksw48@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실태를 취합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뒤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서 이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의하여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음주운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잘못된 회식문화·대리운전에 대한 불신·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인의 음주운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조직의 기강 및 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의 대응방안으로 강력한 처벌 및 해당 기관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음주운전 | 공무원 | 혈중알콜농도 | 내부통제 | 경찰 |

Abstract

This study ha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public official. and come up with an effective counterplan about public official. This research is a study on previous research on government and officer crime. And understanding is the status about public official. It proposed ways to solve the problem

Drunk driving is illegal to drive a vehicle while drunk act. Drunk driving is likely the potential to cause a traffic accident. As a result, drinking and driving is decreasing since the mid-2000s. The cause of the change is to strengthen social awareness, regulations for drunk driving. and public official was decreased. However, it did not disappear. Cause of drunk driving is wrong, such as dinners and cultural distrust of the deputy driving, drinking after misjudgment on his physical condition. public official is a bigger influence. It is a social problem. Personally great damage to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practices and domestic best practices. Officials drunk driving drunk driving prevention measures are proposed to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 it is proposed the organization of internal control measures, union officials supporting the improvement of company dinner.

■ keyword : | Drunk Driving | Public Official | Blood Alcohol Concentration | Internal Control | Police |

1. 서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1].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하여 왔다. 가령,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은 1970년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였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아울러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특정 개인 뿐 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심리적·사회적 악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크다[3].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만의 피해를 고려하였을 뿐, 음주운전자의 주변에 대한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음주운전자의 가족 뿐 만 아니라 직장 동료 및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음주운전은 일반인에 의한 음주운전보다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벌금 및 사고발생 시 보상과 같은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음주운전 처리를 위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공무원이 속해 있는 조직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한 음주운전보다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고, 공식적 통계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음주운전의 의의와 특성

2.1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이 높고, 사고피해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어 운전자 자신 및 피해자에게 중요한 신체·생명·재산상의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4].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무면허운전·뺑소니와 함께 교통의 3대 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문제의 하나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보기도 한다[5].

따라서, 음주운전이란 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신체 및 정신 상태에서 차량이라는 중기(重機)를 운전하여 자신 혹은 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음주운전의 특성

음주운전의 특성은 첫째, 음주운전은 암수성이 강하다. 음주운전은 측정기로 측정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기 어려워 암수성이 높아 대부분의 음주운전이 공식 통계상에는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6]. 경찰활동에 의해서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어 체포될 확률이 0.0005%에 불과하다는 Soper와 Thomson의 연구(1990) 이래로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Shell 등(2006)의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체포확률이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경우 1%, 0.10의 경우 0.5% 보인다고 하고, Freeman과 Watson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2/3가 지난 6개월간 빈번한 음주운전에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 최근 들어 대리

운전업체의 음주운전 단속정보 안내는 적발되지 않도록 안내해 줌으로써 음주운전을 조장하여 음주운전의 압수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둘째, 음주운전은 전통적인 범죄에 비하여 범죄로 인정받은 기간이 짧다. 자동차가 근대에 발명되었기 때문에 다른 음주운전을 논함에 있어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역사가 짧다[8].

셋째, 음주운전은 재범화 경향이 강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들 중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 경험이 있었던 집단의 음주 운전율은 53.8% 이었고, 없었던 집단의 음주 운전율은 29.3%로 오히려 단속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약25%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9].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음주운전 동기는 처벌의 강도 보다는 음주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운전자일수록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알코올 의존도를 줄이지 못할 경우 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음주운전에 대하여 MacLonald와 Mann의 연구(1996)에서는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을 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11].

2.3 음주운전 과정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첫째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성별·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분위기, 음주문화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반응이 영향을 미친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 음주운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합리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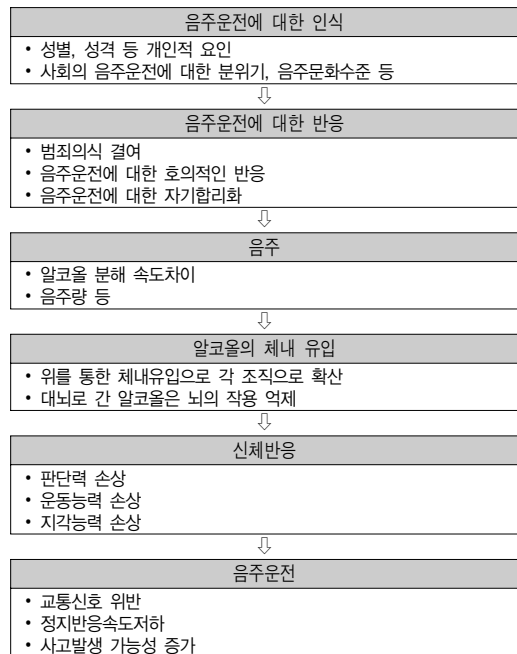
셋째, 음주가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친다. 음주량, 알코올 분해의 속도 차이 등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넷째, 알코올의 체내 유입이 영향을 미친다. 위를 통한 체내유입으로 각 조직으로 알코올이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며, 대뇌로 간 알코올은 뇌의 작용을 억제하여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알코올의 체내유입은 신체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알코올의 체내유입으로 인하여 판단력 손상, 운동능력 손상, 지각능력 손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섯째,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반응, 음주 이후 알코올의 체내유입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며, 음주운전은 교통신호 위반, 정지반응속도저하, 사고 발생 가능성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

표 1. 음주운전 과정



2.4 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은 국민이 지불한 세금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국민이 지급한 세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성실해야 하며, 사적으로 품위를 지켜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은 때에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의 범죄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하였고 판단하여 인사상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서 일반인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에서 이뤄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해악, 조직의 신뢰도에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처벌되는 범죄이다.

표 2. 일반적인 공무원범죄와 음주운전과의 차이

유형	일반적 공무원범죄	음주운전
권력	신분적 권력기반	없음
신분의 영향	신분이 바탕이 된 범죄	신분으로 인한 가중 처벌
원인	금전적 이익	음주로 인한 정상적 판단불가
유형	직권남용, 뇌물수수, 직무유기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금전적 이익	있음	있을 수 있으나 적음
인적피해 가능성	없음	높음
직무 관련성	있음	없음

2.5 공무원 음주운전의 특성

공무원 음주운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일탈행위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무원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과 함께 조직 내 인사 상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된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기관에 의한 처분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조직에 악영향을 미친데 대하여 조직 내 인사 상 처분을 동시에 부과 받는다.

셋째, 공무원 음주운전은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손해는 벌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함께 내부통제 기관에 의한 인사 상 불이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면허취소 1회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으면 신분상 승진 임용제한의 징계를 받으며, 재정상 1개월치 급여의 1/3을 감하고 수당 1/3을 감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공무원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넷째, 공무원 음주운전은 조직의 신뢰도 및 조직 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해당 공무원이 속해있는 조직의 사기저하 및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청렴도 등을 측정하는데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대국민 신뢰도

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공무원 음주운전 실태분석

3.1 공무원 음주운전 실태분석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11년에는 총 1,47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은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이 음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1,49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이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전년 대비 70여 명이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에는 1,436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이 834명이 징계를 받아 전년 대비 20%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은 60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1년~2014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중 징 계	파면	0	0	0	2	1	11	0	1
	해임	2	15	3	1	3	8	4	6
	강등	7	33	8	3	3	25	4	16
	정직	181	136	137	69	89	103	102	86
경 징 계	감봉	242	46	284	111	29	149	372	160
	견책	622	195	568	307	709	306	632	323
	소 계	1,054	425	1,000	493	834	602	1,114	592
합 계	1,479		1,493		1,436		1,706		

* 지방공무원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국가공무원 : 중앙정부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출처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14년에는 1,70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집계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이 1,114명으로 전년 834명보다 30%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중앙소속 공무원은 전년보다 10명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011년·2012년에 비한다면 더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활동의 한계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하에 음주운전 억제에 위해서는 처벌의 확실성, 심각성을 증대시키는 중심으로 정책연구가 이루어 졌다[24]. 실제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행 정책은 강경한 단속과 처벌에만 열을 올릴 뿐, 음주운전의 상습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13].

공무원의 음주운전 예방정책은 일반인의 음주운전 예방 정책과 같이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음주운전 예방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음주운전예방 광고, 음주운전 예방 SMS 발송, 음주운전 예방 수시교육, 음주운전 적발 시 부서장 통보 및 승진제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인 예방법이 부족한 탓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4. 공무원 음주운전 해결방안

4.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이라는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통한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 일본의 경우 2000년에만 해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는 1,276명으로 당시 1,217명의 한국의 상황과 비슷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처벌 수위는 높였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 대신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하여, ‘음주는 과실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14].

그 결과, 2002년 음주운전 사망자는 1,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09년부터는 연간 300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6%대에 불과하여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본 외에도 영국의 경우 50년 만에 0.08%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15].

따라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기준을 일반인 보다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4.2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달 말일, 명절 전후, 정기인사 시즌 전후, 연말연시에 공무원의 음주가 빈번해 짐에 따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의 상당수는 근무지 근처에서 음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해당기관의 내부통제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각 부서 별 음주운전예방 홍보활동 및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활동을 강화한다.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속해 있는 부서에서 직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기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직장교육을 강화할 경우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직장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전력자를 음주운전예방 강사로 위촉하여 직원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등 방법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음주운전 교육이 이뤄지도록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통제 방안을 실행한다. 음주운전의 특성 중 재범화 경향이 강하고, 음주를 많이 하는 자가 음주운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소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 공무원에 대하여 감찰 부서 등에서 집중적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4.3 음주 문화의 개선

공무원 음주운전의 상당수가 회식장소에서 음주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주를 하지 않고 회식을 하는 문화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항상 문제로 지적받는 것이 조직의 회식문화이다. 우리나라의 조직문화에서는 회식하는 자리에서 음주를 빼고 진행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음주가 포함된 회식에서는 반드시 회식 이후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회식을 1차에서 끝내는 등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음주문화 개선을 위하여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회식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공무원을 비롯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도 인사적인 불이익 및 조직평가에도 불이익을 부가하여 해당기관의 조직 스스로가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그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 당시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에 '주의' 이상의 강력한 징계를 부과함과 동시에 성과평과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처분 내용을 강화하고, 이와 아울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속해있는 부서 내 교육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연대책임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입함으로써 동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5.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신분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공무원범죄와 달리 공무원의 일탈행위로서 공무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 음주운전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무원 범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분과 기관 내부의 인사처분이 동시에 부과된다. 그리고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사회적 손해가 더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일본·영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직장교육과 함께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화와 음주에 취약한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음주문화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홍보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하여 음주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회식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공무원을 비롯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도 인사적인 불이익 및 성과평가에도 불이익을 부가하여 해당기관의 조직 스스로가 음주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무원 범죄의 한 유형으로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개인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조직적·사회적 피해가 크다. 따라서 이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위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참고 문헌

- [1] 정철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성과 음주운전자의 준법성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7권, 제2호, pp.180-199, 2007.
- [2] 박기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pp.83-109, 2008.
- [3] 전영실, “음주운전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7권, 제1호, pp.83-96, 2006.
- [4] 기광도, “음주운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2호, pp.3-28, 2010.
- [5] 김연수, 김대권, 허준, “음주운전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3호, pp.59-88, 2012.
- [6] 박기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pp.83-109, 2008.
- [8] 박동균, 박은미, “음주운전 실태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1호, pp.1-17, 2010.
- [7] 박기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 정책 구상,”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pp.83-109, 2008.
- [8] 박동균, 박은미, “음주운전 실태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1호, pp.1-17, 2010.
- [9] 강병수, 김진형, “음주형태 및 운전형태와 음주운

전과의 관계,” 도시행정학보, 제24권, 제4호, pp.203-223, 2011.

- [10] 강병수, 김진형, “음주형태 및 운전형태와 음주운전과의 관계,” 도시행정학보, 제24권, 제4호, pp.203-223, 2011.
- [11] 강병수, 김진형, “음주형태 및 운전형태와 음주운전과의 관계,” 도시행정학보, 제24권, 제4호, pp.203-223, 2011.
- [12] 최인섭, 박철현,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13] 강병수, 김진형, “음주형태 및 운전형태와 음주운전과의 관계,” 도시행정학보, 제24권, 제4호, pp.203-223, 2011.
- [14]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184/1>, 동아일보, 2016. 2. 25.
- [15]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184/1>, 동아일보, 2016. 2. 25.

저자 소개

신재현(Jae-Hun Shin)

정회원



- 2013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박사)
- 2013년 : 前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관심분야> : 범죄예방, 부패 등

김상운(Sang-Wo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교육, 민간경비 등